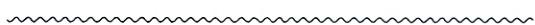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에 대하여 정화 명령을 할 경우에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정화 명령의 경우와 같이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정기 수질검사 주기의 기산점을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명확히 하며, 수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담당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의 내용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수질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능과는 무관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상부보호공의 규격 기준을 폐지하고, 음용수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중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22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5배”를 각각 “3배”로, “10배”를 각각 “6배”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75/100$$

별표 1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 1\text{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자수} \times 30/100) + \text{퇴직공제불입금} \times 10 + \text{최근 } 3\text{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10배”를 각각 “6배”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75/100$$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 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 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